

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31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년 8월 29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02일

## 2. 제안이유

- 유사·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 관리주체를 명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의안 제출시 유사·중복 용역 검증을 위한 사전 절차 추가(안 제9조제3항)
- 나. 부실용역 방지를 위한 용역실명제 의무화(안 제14조의2)

#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‘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권고’에 따라 유사·중복 용역 검증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가하고, 학술용역의 남발과 부실용역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용역 실명제를 도입하고자 제출됨.

##### 나. 학술용역 심의회 운영 개요

- 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)는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학술용역<sup>1)</sup>의 심도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·감독 등을 위하여 학술용역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)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- 심의회는 당연직 내부위원(공무원 4명), 외부위원(시의원 4명,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46명)으로 구성되며, 학술용역 상정 안건에 따라 그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위원이 참석하고 있음.
- 학술용역 심의는 환경, 건설·안전, 교통, 행정 등의 연구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 분야의 위촉위원 구성 비율이 높은 편임.

---

1)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(행안부 예규)에서는 용역을 일반·기술·학술연구용역으로 구분하고 학술연구용역은 ‘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’으로 정의하고 있음.

< 분야별 위원 구성 >

(단위 : 명/건)

구분	계	환경	건설 안전	교통	행정	도시 계획	문화 관광	경제	주택 건축	아동 청년 교육	여성	보건 의료	재 정	복 지
위원	38	4	4	4	4	3	3	3	3	2	2	2	2	2
심의 건수	209	38	30	18	18	18	17	16	14	14	10	8	4	4

- 심의회는 정기회의(9월)와 수시회의(3월~11월)를 통해 과제의 필요성·타당성, 수행기간·용역비 등의 적정성을 심의함.
- 최근 3년간 시정현안 문제 해결 또는 대안 마련이나 각종 정책의 수립을 위해 215건의 학술용역을 심사하여 150건을 적정과제로 채택함.

< 최근 3년 학술용역 심의결과 >

구분	계			2020			2021			2022		
	건수	적정	부적정	건수	적정	부적정	건수	적정	부적정	건수	적정	부적정
심의 결과	215	150	65	119	79	40	90	66	24	6	5	1
비율 (%)	100	70	30	100	66	34	100	73	27	100	83	17

다.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

-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용역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용역 투명성을

제고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함(2020.8).

< 국민권익위원회 ‘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’ >

과제 구분	세부 내용	대상기관 (서울시 이행여부)
①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확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제 선정단계의 유사중복 검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사 과제를 반복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심의 전 검증을 거치도록 명시</li> </ul> </li> <li>☞ 「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제·개정</li> </ul>	지방자치단체 (서울시 미이행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</li> </ul> </li> <li>☞ 「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제·개정</li> </ul>	지방자치단체 (서울시 이행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과제, 연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규정</li> </ul> </li> <li>☞ 「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제·개정</li> </ul>	지방자치단체 (서울시 이행)
②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용역 관리법령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</li> <li>☞ 「행정 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」 개정</li> </ul>	행정안전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</li> </ul> </li> <li>☞ 「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제·개정</li> </ul>	지방자치단체 (서울시 미이행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결과 검수 시 유사성 검증을 수행</li> <li>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</li> </ul> </li> <li>☞ 「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제·개정</li> </ul>	지방자치단체 (서울시 이행)
③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결과, 평가 및 활용상황을 공개하도록 근거 마련</li> </ul> </li> <li>☞ 「연구용역 공개 조례」 제·개정</li> </ul>	지방자치단체 (서울시 미이행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</li> <li>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</li> </ul> </li> <li>☞ 「연구용역 공개 조례」 제·개정</li> </ul>	지방자치단체 (서울시 미이행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결과 등 공개 촉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, 공개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</li> </ul> </li> <li>☞ 「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개정</li> <li>☞ 「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」에 반영</li> </ul>	행정안전부

-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등 6개 과제(세부과제 27건)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,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음.

연번	권고 연도	국민권익위원회 미이행 과제 (세부과제 27건)	담당부서
1	2013	◦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또는 변호사 선정·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-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시 공모방식 도입 등 9건	법률지원담당관
2	2018	◦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-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의무화 등 2건	사회적경제담당관
3	2019	◦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-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규정 명시 등 5건	체육정책과
4	2020	◦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- 유사 과제 반복 수행 방지를 위한 과제 심의 전 검증 등 4건	시정연구담당관
5	2020	◦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- 대관공고는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 준용 등 6건	박물관과, 한성 백제박물관, 서울교통공사, 서울디자인재단
6	2021	◦ 지자체 장기근속 퇴직(예정)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- 일괄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 집행 금지 1건	인사과

- 그러나 2022년 청렴도 측정 체계 개편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이 청렴도 평가(부패방지 시책평가)에 포함되면서, 서울시는 ‘국민권익위원회 미이행 평가 과제 이행계획’을 수립함(2020.3.7.).
-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받은 서울시는 주요 원인인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저조 문제를 개선하는 조례를 제출함.

## 라. 개정안의 세부 내용

- (1) 유사·중복 용역 검증절차 마련(안 제9조제3항 신설)
- 개정안은 심의회 개최 이전에 학술용역 내용의 유사·중복에 관한 검증을 거쳐 과제심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함.

현행	개정안
제9조(의안제출) ①·② (생략) 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div>	제9조(의안제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③ 제1항의 의안 제출 시 주관부서에서는 <u>학술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 중인 학술용역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. 다만,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.</u>
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인 이 규정은 연구용역 과제 심의 전 유사·중복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불필요한 연구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임.

(2) 학술용역실명제 신설(안 제14조의2)

- 안 제14조의2는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,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도록 신설함.
-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▶용역 추진계획 수립, ▶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, ▶용역 결과 공개와 활용 등을 관장함.

현행	개정안
<신 설>	<p>제14조의2(학술용역실명제)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.</p> <p>②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,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</li> <li>2.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</li> <li>3.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</li> <li>4.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li> </ol>

- 서울시는 학술용역 실명제에 대해 내부 지침이 있고 서울계약마당<sup>2)</sup>에서 책임연구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, 대시민 공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았음.
-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과제 담당관의 실명과 책임을 명시하여 학술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, 학술용역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입법효과가 있음.

2) 서울시, 자치구, 투자·출연기관 등 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, 수의계약 같은 모든 계약 정보 공개와 실적증명서 발급까지 5개 정보(발주계획, 입찰공고, 개찰결과, 계약체결정보, 기업정보지도)를 공개하고 있음.

## 라. 종합의견

-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‘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개정 권고’에 따라 유사·중복 용역 검증절차와 학술용역 실명제를 마련하고 있음.
- 학술용역 추진 시 중복연구에 의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역할 부여를 위한 과제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학술용역에 대한 사후 평가와 활용상황 점검 등의 공개에 대한 세부적 운영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입법적 보완이 요구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용우	02-2180-8062